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경인지역에서 꽃사슴·엘크등 20여두를 사육하고 있다고 밝힌 촉모씨는 『예년의 경우 녹혈을 복용하기 위해 단체로 소비자가 농장을 방문하는 등 녹혈

· 생녹용 판매에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작년의 사슴피 세균오염파동의 영향으로 올해는 손님이 크게 줄어 인전비·사료대등 사육비 마련에도 고충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양록업계의 이러한 어려움의 가중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해결방안이 전무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어차피 사슴의 수입개방으로 인한 사슴가격의 하락이 불가피한 만큼 당연한 귀결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지 업계의 위기를 양록산물의 가공 및 유통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전기마련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양록업이 안정적으로 산업화된 축산으로 자리잡기 위한 여건 및 분위기조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양록업 영위에 대한 특소세·축산법 개정·약사법개정건등 불합리조항을 수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양록인들 간의 불화로 인해 일과성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기존 업의 영위를 위해 해왔던 과거와 같은 방식의 사슴사양이나 판매방식으로써는 현재보다도 더 침체의 늪으로 빠져버릴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과감히 현체제를 탈피, 양록업계의 위상적립과 함께 산업으로서의 정착을 위한 여건조성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인사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이와함께 양록산물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해서도 새로운 홍보책마련을 위시해서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양록산물 생산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

이울러 사슴 유통문제에 있어서도 서로간의 과다 경쟁을 배제하고 양질의 사슴을 확대공급함으로써 수입사슴이 설자리를 없게해 국내 사슴업계의 자리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업계의 한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양록업계가 안고 있는 불안구조를 혁신시킬 만한 대안은 없다』고 전제하고 『양록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양록산물의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구조 개선안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에서 수입되는 사슴이 가격에 있어 결코 국내생산 사슴보다 싼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전국의 양록농가가 수입사슴의 단편적인 면에 혼혹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양록업에 종사한다면 빠른 시일안에 업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밝히고 있다. ☆

축산신문기자. 김 한 응.

## 녹용유통 활성화대책 시급

양록업을 농가의 주요소득원으로 육성하고 녹용자급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녹용에 대한 유통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양록업계는 올해 사슴수입자유화로 인해 경

기가 침체된데다 한의약계의 수입녹용 선호경향으로 녹용판매에 어려움을 겪는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따라서 양록업계는 수입녹용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과 국산녹용의 유통활성화대

책 없는한 점진적으로 국내 사슴을 육성, 녹용자급도를 높인다는 정부정책은 유명무실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양록업계의 목소리다.

이같은 이유로 양록업계는 녹용판매 유통의 법적 제약을 들고 있다.

양록농가가 생산한 녹용은 현행 약사법에 약으로 규정돼 있고 녹용을 건조, 절단, 정제를 위해서는 약사법 제26조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아야하며 판매를 위해서는 법제35조에 따라 의약품 판매허가를 받도록하고 있다

따라서 양록농가는 생산한 녹용판매로 위해서는 녹용건조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녹용건조를 위해서는 제조업허가를 받아야하며 이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판매허가를 받아야하는 모순을 야기하고 있다.

이같은 법에 끝여 양록농가들은 녹용을 단순히 생녹용으로 절각 즉시 실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형태로 녹용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양록업계의 현실이다.

이로써 양록농가들은 생녹용의 판매가 유리한 도시근교에서 사슴을 사육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값싼 수입녹용에 대응해 양질의 조사료와 좋은 환경에서 사슴을 사육, 품질높은 녹용을 생산해 수입녹용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제약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양록업계는 사슴뿔의 건조는 녹용생산과 정으로 봐야하며 이를 판매하는 것은 생산자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이를 제약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는 것을 관계당국에 누차 건의해 왔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녹용은 현행 한약규격집에 의약품으로 수재돼 이의 절단, 건조, 파쇄는 제조업과 제조품목허가를 받아 품질이 우수하고 규격화된 제품이 유통돼야 한다는 입장으로써 양록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국내 녹용소비는 외국산이 약 10만kg(건조) 수입돼 한약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산 녹용은 8만kg(생녹용)가 생산돼 생녹용으로 소비되고 있다.

따라서 양록업계는 국산녹용자급도를 높이고 양록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같은 불합리한 법이 개정돼야 하며 녹용유통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즉 녹용을 건조하는 것은 축산물을 보관하는 한방법이기 때문에 양록농가가 건조해 판매하는 것이 자유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입건조녹용에 국산생녹용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산녹용을 이용한 제품개발에 대해서 생약제조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국내 양록인이 국산녹용을 냉동전공건조기술을 이용해 국산녹용의 성분, 효능, 독성연구를 하여 특허를 받아 세계 최초로 녹용생약화에 성공했는데도 일반의약품이 아닌 원료의약품으로 허가해 국산생녹용생약화의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양록업계는 수입녹용에 대해서는 일정한 성분이나 품질에 대한 과학적 근거없이 무분별 수입해 한약재로 이용하면서 국내 녹용에 대해서는 건조, 가공, 판매에 여러가지 제약조건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양록업계는 국내 사슴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농가의 양질 녹용생산 및 우수양록개발, 조사료자급에 의한 생산비의 절감등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앞서 양록업계는 국산녹용산물에 대한 다양한 제품개발로 녹용소비가 다양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녹용판매유통에 제약요소인 법적 제도적 개선이 뒷따라야 한다는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 다. ☆

농수축산신보 조문 규